투고논문 심사규정

**제 1 조 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(이하 “학회”라고 한다)의 학회지 『언어청각장애연구』(이하 “학회지”라고 한다)에 게재신청된 논문의 심사과정과 게재여부 결정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 (편집위원회의 구성 등)**
① 학회의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지의 편집위원장(이하 “편집위원장”이라고 한다)과 편집위원을 선임하여 편집위원회들을 구성한다.
② 편집위원장은 분야별(말분야, 언어분야, 청능분야 및 관련분야)로 각 1명씩의 상임편집위원을 임명하여 상임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.
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전국 7개 도에 분포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교수이어야 하며,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④ 편집위원장은 필요할 때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논문심사위원 결정과 심사의뢰를 위한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신청 마감일로부터 2주 안에 열어야 한다.

**제 3 조 (편집위원회의 역할)**
① 학회지를 연 4회(3월 31일, 6월 30일, 9월 30일, 12월 31일) 발간한다.
②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을 접수하여 이를 체제에 맞추어 수정 및 편집한다.
③ 상임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 각각에 3명씩 논문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하고 논문심사과정을 감독한다. 논문심사위원은 편집위원들 중에서 선정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이 아닌 심사 자문위원에게 의뢰할 수 있다.
④ 접수된 논문의 학회지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
**제 4 조 (논문심사)**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“게재가”, “수정후게재가”, “수정후재심” 및 “게재불가” 중 하나로 평가하고 <부록>(『언어청각장애연구』게재신청논문 심사표)을 작성하여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심사논문원본과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 5 조 (논문심사 기준)**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사한다.
① 연구주제의 학문성
②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
③ 연구방법의 타당성
④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논리성
⑤ 연구의 학문적 공헌도
⑥ 학술지 체제 적합성 여부

**제 6 조 (논문의 학회지 게재여부 결정)** 편집위원장은 제 4 조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게재신청논문 심사표를 각 논문별로 종합하여 심사위원 2명 이상이 같은 심사결과(“게재신청논문 심사표” 중 “종합의견”의 “심사결과”)로 판정(“게재가”, “수정후게재가”, “수정후재심” 또는 “게재불가”)한 논문과 심사위원 3명이 모두 다른 판정을 내린 논문으로 구분하여 <표>(논문의 학회지 게재여부 결정과정)에 기술된 과정을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.

**<표> 논문의 학회지 게재여부 결정과정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최초 심사 결과**  | **심사결과통보 또는 재심과정**  | **최종 게재여부 결정**  |
| 심사위원 2명 이상이 다음과 같은 판정을 내린 경우  | 게재가  | ① 게재가 통보  | 게재가  |
| 수정후게재가  | ① 투고자에게 “수정후게재가”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    전달(편집위원장)② 수정 후 수정답변서 제출(저자)③ 검토 후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 요구 또는 다음 호    학회지 게재논문 심사대상으로 결정(편집위원장과    해당분야 상임편집위원)  | 게재가(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)  |
| 게재불가(수정 내용이 미흡한 경우)  |
| 수정후재심  | ① 투고자에게 “수정후재심”으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    전달(편집위원장)② 재심거부 회신(저자) 또는 수정답변서 및 수정원고    제출(저자)③ “수정후재심” 판정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의뢰    (편집위원장)④ “게재가” 또는 “게재불가”로 결정(재심위원)  | 게재가(2명 이상의 재심위원이 게재가 판정을 내린 경우)  |
| 게재불가(저자의 재심거부 또는 1명의 재심위원만 게재가 판정을 내린 경우)  |
| 게재불가  | 투고자에게 "게재불가"로 통보  | 게재불가  |
| 심사위원 3명이 모두 다른 판정을 내린 경우  | 게재가,수정후게재가,게재불가  | ① 투고자에게 “수정후게재가”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    전달(편집위원장)② 수정 후 수정답변서 제출(저자)③ 검토 후 미흡한 경우에는 재수정 요구 또는 다음 호    학회지 게재논문 심사대상으로 결정(편집위원장과    해당분야 상임편집위원)  | 게재가(수정 내용이 충분한 경우)  |
| 게재불가(수정 내용이 미흡한 경우)  |
| 게재가,수정후재심,게재불가  | ① 투고자에게 “수정후재심”으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    전달(편집위원장)② 재심거부 회신(저자) 또는 수정원고 제출(저자)③ “수정후재심” 판정 심사위원에게 재심의뢰    (편집위원장)④ “게재가” 또는 “게재불가”로 결정(재심위원)  | 재심위원이 게재가 판정을 내린 경우  |
| 게재불가(저자의 재심거부 재심위원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)  |
| 수정후게재가,수정후재심,게재불가  | ① 투고자에게 “수정후재심”으로 통보하고 수정제의 내용    전달(편집위원장)②재심거부 회신(저자) 또는 수정원고 제출(저자)③ “수정후재심” 판정 심사위원에게 재심의뢰    (편집위원장)④ “게재가” 또는 “게재불가”로 결정(재심위원)  | 게재가(재심위원이 게재가 판정을 내린 경우)  |
| 게재불가(저자의 재심거부 또는 재심위원이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)  |

**제 7 조 (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)**
① 논문의 저자는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학회가 정하는 논문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논문의 저자는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학회가 정하는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③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논문의 저자는 제 2 항과는 달리 학회가 별도로 정하는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④ 학회가 정한 원고분량을 초과한 논문의 저자는 초과분에 대하여 학회가 정하는 추가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⑤ 학회의 회장은 논문심사위원에게 학회가 정하는 논문심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
**제 8 조 (논문심사의 보안)** 논문심사의 내용과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에 대한 정보는 논문심사위원 이외의 누구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.

**제 9 조 (심사결과 이의 제기)**
① 논문 투고자는 본심사 및 재심사의 심사판정 결과에 불응할 경우, 심사결과 통지 후 5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공식적인 서면(전자우편을 포함)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이 때, 이의 제기자는 편집위원회의 재심에 따른 재심사료 6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② 이의 제기 시, 편집위원장은 이의 신청이 접수된 7일 이내에 해당분야 편집위원 2인과 편집위원장으로 구성된 편집소위원회를 소집하고 제기된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. 단, 편집소위원회의 구성 시에는 투고된 논문의 초심 및 재심 심사자, 제 1저자, 공동저자, 그리고 논문과 관계된 그 외의 자는 제외하도록 한다.
③ 편집소위원회는 이의 제기된 심사논문의 원문과 심사자의 심사평, 투고자의 이의 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, 편집소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해당 논문의 게재가 및 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④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사항은 이의 제기자에게 편집위원장 명의의 전자우편으로 통보하도록 한다.

**제 10 조 (규정의 개정)**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.
제 정: 1999. 10. 30.
1차개정: 2000. 5. 31.
2차개정: 2001. 10. 30.
3차개정: 2002. 3. 31.
4차개정: 2003. 3. 31.
5차개정: 2006. 6. 30.
6차개정: 2006. 11. 30.
7차개정: 2007. 7. 31.
8차개정: 2009. 3. 31.
9차개정: 2009. 9. 30.
10차개정 2010. 9. 30.